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안 (임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414
----------	-------

발의연월일 : 2026. 8. 4.

발 의 자 : 임미애·김정호·이연희

임오경·강득구·손 솔

송옥주·문금주·박지원

이개호·윤준병·조계원

전종덕 의원(13인)

제안이유

농업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식량안보의 근간이나, 폭염,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의 피해에 가장 취약한 분야임. 한편, 농업·농촌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배출원이자 흡수·저장하는 흡수원으로서의 이중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높음.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농업·농촌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사항을 개별 법률에 분산하여 규정하고 있어,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고 기후대응농업활동에 대한 지원과 성과에 대한 보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또한 농업인 등이 저탄소 농업기술 등을 통해 실현한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과학적으로 검증·인증하고 이를 경제적 유인으로 연결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농업인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농업·농촌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추진체계 정비, 기후대응농업활동 촉진 및 탄소감축실적 인증제도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 안정과 함께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농업·농촌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농업인 등의 경영 안정과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식량의 안정적 생산·공급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기본원칙과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후변화가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평가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라. 농업기후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제공하기 위하여 농업기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관련 업무를 통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국립농식품기후위기대응본부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후위기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대응 농업활동 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참여 농업인 등에게 공익직접지불제도와 연계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바. 농업인 등이 달성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검증·인증하여 농업 탄소감

인증서를 발급하고, 기업 등이 이를 구매할 수 있는 자발적 탄소거래 플랫폼
품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저탄소 농업기술 등을 활용하여 생산한 농축산물을 저탄소 농축산물로
인증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이를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
하게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아. 기후위기 대응 농업기술의 개발·보급, 녹색전환 신산업 육성 및 국제협
력 촉진을 위한 시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보조금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한
환수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농촌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를 확보하며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말한다.
2. “기후위기”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후위기를 말한다.
3.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탄소중립을 말한다.
4. “저탄소 농업기술”이란 농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기술을 말한다.
5. “기후대응농업활동”이란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농경지·초지의 온실가스 흡수 기능을 증진하거나 기후위기 적응 역량을 강화하는

농업 활동을 말한다.

6. “농업기후정보”란 농업 활동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활용되는 기상·기후·재해·온실가스 관련 정보와 자료를 말한다.

7. “농업 탄소감축증서”란 농업인 등이 기후대응농업활동을 통해 달성한 온실가스 감축량 또는 농경지·초지의 온실가스 흡수량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그 가치를 계량화한 인증서를 말한다.

8. “농업인 등”이란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을 말한다.

9. “농업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농업·농촌 분야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공급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

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시책의 이행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조사·연구, 정보구축, 국제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업·농촌 분야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농촌 분야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농업·농촌 분야 기후대응농업활동 발굴·확산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 대응 농업기술의 연구·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농업분야 녹색성장 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농촌공간의 기후회복력 강화와 토양 탄소 흡수·저장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업·농촌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기본계획,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친환경농업 등의 촉진에 관한 정책과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지구온난화 방지 등에 관한 정책,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 「축산법」 제32조의2에 따른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과 같은 법 제42조의13에 따른 축산환경 개선계획,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과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책

을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추진실적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등”이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후영향평가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농업·농촌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기후영향평가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 또는 실태조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영향평가등 관련 사항에 관한 권한 또

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농업기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후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제공하기 위하여 농업기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기후대응농업활동 점검, 제12조에 따른 탄소감축실적 인증 및 제14조에 따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등을 위하여 위성정보, 항공사진 등을 활용하여 농업재해 현황, 농작물재배 현황과 제11조에 따른 기후대응농업활동 등을 관측·점검하고 농업기후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등에 데이터의 제출과 시스템 연계 등 농업기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농업기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립농식품기후위기대응본부의 설치) ① 제7조에 따른 기후위기 영향·취약성 평가, 제8조에 따른 농업기후정보시스템의 운영 지원, 제12조에 따른 탄소감축실적 인증, 제16조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농업기술의 개발·보급 등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국립농식품기후위기대응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그 밖에 본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업무의 협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 기후위기 대응 및 지원 시책

제11조(기후대응농업활동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 분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후대응농업활동 촉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후위기 적응 사업

가. 작목·작형 전환

나. 기후변화로 인한 병충해 및 가축질병의 예방 및 신속한 방제
다. 스마트농업 확산

라. 품종 개발·보급 등 기술 혁신

2. 온실가스 감축 사업

가. 저탄소 재배방식 확산

나. 저탄소 사양관리 확산

다. 에너지 이용 효율화, 유기성 자원과 재생에너지 활용 촉진

라. 저탄소 농업기술, 농기자재 개발·보급 등 기술 혁신

마. 저탄소 농축산물 생산·유통·소비 촉진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후대응농업활동에 참여하는 농업인 등에게 활동 이행 여부, 이행 정도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와 연계한 재정적 지원과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활동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지 아니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제12조(탄소감축실적 인증제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등이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후대응농업활동을 통하여 달성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검증하여 인증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증받은 농업인 등에게 농업 탄소감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농업 탄소감축증서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증·인증과 제2항에 따른 발급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자발적 탄소배출권 거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업 등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상쇄를 목적으로 농업 탄소감축증서를 구매할 수 있는 자발적 탄소거래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상쇄배출권으로 전환·인정될 수 있도록 검증 기술을 고도화하고 관계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물품구매에 대하여 농업 탄소감축증서를 구매한 기업이 입찰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발적 탄소거래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⑤ 탄소감축증서 거래방법, 거래절차, 최소거래단위 및 등록비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저탄소 농축산물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저탄소 농업기술 등을 활용하여 생산한 농축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탄소 농축산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우선구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

공기관은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유통·소비 촉진을 위하여 농축산물 구매 또는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경우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의 대상이 되는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기후위기 대응 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농업·농촌의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농업기술의 연구·개발·실증 및 보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위탁기관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녹색전환 신산업 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의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농업분야 녹색전환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술 개발, 현장 실증 및 사업화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발된 신산업 기술 보급을 위하여 구매 비용 보조, 농업 정책자금 금리 우대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 분야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농업·농촌 분야 국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조사·연구
2. 농업·농촌 분야 인력·정보의 국제교류
3. 농업·농촌 분야 국제 기후위기 대응 규제·기준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분야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장 보칙

제19조(위임·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농업·농촌 분야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환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금 또는 보조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 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 또는 지원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자료 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 동일한 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따라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미 지원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환수금액, 환수사유, 납부기한 및 불복절차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수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후영향평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기후영향평가등은 이 법 제7조에 따른 진단·평가로 본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실시된 기후영향평가등의 결과는 이 법에 따른 진단·평가 결과로 보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3조(권한 위임·위탁 및 하위 법령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한국농어촌공사가 위임 또는 위탁받은 권한과 업무는 이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받

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정해진 기후영향평가등의 내용 및 방법 등은 이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자가 수행한 기후영향평가등의 결과와 그에 따른 행정 행위는 이 법에 따라 수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를 삭제한다.

제64조제2호를 삭제한다.